

의안번호	2213008
의 퇴 인	김동아의원
회 답 일	2025.10.24.
추 계 번호	25B512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자영업자에 대해 출산전후휴직급여등을 지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사업대상자에 대한 시나리오에 따라 2027년 6억 8,400만원~18억 6,700만원, 2031년 12억원~32억 7,400만원으로 향후 5년간 총 46억 2,000만원~126억 800만원(연평균 9억 2,400만~25억 2,200만원) 이상으로 추계
- 본 추계서에서의 시나리오1은 최근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집행 현황을 토대로 사업대상자를 산출하였으며, 시나리오2는 예술인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집행현황을 토대로 사업대상자를 산출함

[표 1] 추가재정소요(추정치):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자영업자출산전후휴직급여등 (시나리오1)	684	787	906	1,043	1,200	4,620	924
자영업자출산전후휴직급여등 (시나리오2)	1,867	2,149	2,473	2,845	3,274	12,608	2,522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장래에 발생할 출산에 대한 인식의 변화 및 제도적 변화와 실제 지급단가 등으로 인해 본 추계에서의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조(보험료)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징수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그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함.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 제75조·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77조의4·제77조의9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급여등, 제77조의11에 따른 자영업자 육아휴직급여 및 제77조의12에 따른 자영업자출산전후휴직급여등의 지급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음(제2항)	의무·재량 규정
2	안 제77조의11(자영업자의 육아휴직 급여)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임신 중인 여성 피보험자의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양육을 이유로 휴직(휴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한 급여(이하 “자영업자육아휴직급여”라 한다)를 지급함.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함(제1항)	의무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자영업자가 제1항의 육아휴직에 따라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그 고용에 필요한 비용(이하 “대체인력고용지원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제1항에 따른 자영업자육아휴직급여와 제2항에 따른 대체인력고용지원금의 지급 요건, 지급 수준, 지급 기간, 신청 및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의무규정
3	안 제77조의12(자영업자의 출산전후휴직 급여등)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휴업을 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직급여 등(이하 “자영업자출산전후휴직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77조의4제1항 또는 제77조의9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함(제1항)	의무규정
		제1항에 따른 자영업자출산전후휴직급여등의 지급요건, 지급수준, 지급기간과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4	안 제116조(벌칙) 제2항3호 신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2항)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장의4에 따른 자영업자육아휴직급여, 대체인력고용지원금, 자영업자출산전후휴직급여등을 받은 자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6조(보험료)	×	• 미첨부(자영업자육아휴직급여)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본문 참조
		○	• 공식추계(자영업자출산전후휴직급여등) - 본문 참조
2	안 제77조의11(자영업자의 육아휴직 급여) 신설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본문 참조
3	안 제77조의12(자영업자의 출산전후휴직 급여등) 신설	○	• 공식추계
4	안 제116조(벌칙) 제2항3호 신설	—	• 미대상 - 개정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영업자육아휴직급여, 대체인력고용지원금, 자영업자출산전후휴직급여등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세외수입이 증가할 수 있으나, 이는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¹⁾에 따라 비용추계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미대상 사유에 해당함

1) 제2조(정의)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생략)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의 부칙과 국회 심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현행법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중 근로자에 한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며, 고용보험 가입이 의제된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특례규정을 통해 예외적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77조의11제1항 및 제3항) 개정안은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자영업자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자영업자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될 경우 고용보험기금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은 근로자이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이 자영업자까지 확대됨
 -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 : (현행) 근로자 → (개정안) 자영업자 추가
 -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자영업자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될 경우 고용보험기금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다음의 이유로 장래에 발생할 추가재정소요를 파악할 수 없음
 - 첫째,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육아휴직급여의 지급요건, 지급수준, 지급기간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개정안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음
 - 둘째,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의 사업자등록이 유지되고 있는 동안 육아휴직을 구분해야 하므로, ‘휴직’에 대한 개념 정립 및 명

확한 정의가 선행되어야 하나, 현시점에서는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되지 않아 장래에 발생할 추가재정소요를 파악할 수 없음

- 셋째,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²⁾를 양육 중인 자영업자의 규모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자료가 부재하여 사업대상자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산하기 곤란함
- 넷째, 현행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에 연동되어 있으므로³⁾,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의 통상임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이와 관련한 자료가 부재하여 장래에 발생할 육아기간 급여의 지원단가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가 없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파악할 수 없음

□ (안 제77조의11제2항 및 제3항)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영업자가 육아휴직에 따라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그 고용에 필요한 비용(이하 “대체인력고용지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재정변화는 장래에 추진할 대체인력고용지원금의 지원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현시점에서 이를 추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이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도 예산의 범위로 유동적이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개정안은 대체인력고용지원금의 지급요건, 지급수준, 지급기간, 신청 및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추가재정소요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안 제77조의11(자영업자의 육아휴직 급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임신 중인 여성 피보험자의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양육을 이유로 휴직(휴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한 급여(이하 “자영업자육아휴직급여”라 한다)를 지급한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 2.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2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 3.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6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6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 (안 제77조의12) 개정안은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휴업을 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직급여 등(이하 “자영업자출산전후휴직급여등”)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자영업자출산전후휴직급여등이 지급될 경우 고용보험기금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현행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대상이 현행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에서 자영업자까지 확대됨
 - 출산전후 급여 : (현행)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 (개정안) 자영업자 추가

[표 2] 노무제공자, 예술인, 자영업자 출산전후휴가 사용자 수: 2020~2024년

(단위: 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근로자	70,933	70,222	72,187	71,716	76,055
노무제공자	—	18	392	888	909
예술인	—	26	61	115	141

주: 1)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은 2021.7월부터 적용 및 시행되어 2021년 7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인원을 중복제거한 순인원임

2) 예술인은 연도 말 기준 피보험자수

3) 자영업자는 연도 말 기준 가입자 수

자료: 고용보험 DB, 고용노동부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장래에 발생할 자영업자출산전후휴직급여등의 지급요건, 지급수준, 지급기간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개정안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음
- 자영업자의 사업자등록이 유지되고 있는 동안 휴업을 구분해야 하므로, 자영업자의 ‘휴업’에 대한 개념 정립 및 명확한 정의가 선행되어야 하나, 관련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아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가 없음
- 다만, 본 추계서는 현행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현황 및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 구조가 추계기간(2027~2031년) 동안 유지된다는 가정을 토대로 산출

□ 개정안의 시행으로 자영업자출산전후휴직급여등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기간 동안 자영업자출산전후휴직급여등의 사용자 수에 자영업자출산전후휴직급여등의 지급기간과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산출

- (사업대상자 수) 자영업자의 경우 장기간의 휴업이 사업 유지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어 자영업자출산전후휴직급여 등 지급에 따른 행태 변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본 추계서의 사업대상자 수는 노무제공자 및 예술인의 출산전후휴가 사용현황을 준용하여 시나리오로 구분하여 추산
 - 추계기간 동안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장래에 발생할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자의 비율은 2024년 기준 노무제공자⁴⁾ 및 예술인⁵⁾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 대비 출산전후휴가 사용자 수의 비중을 준용하여 산출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임의가입 형태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출산전후 시기에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확대되는 등의 이유로 고용보험 가입자의 수가 변화할 수 있으나, 연평균 증가율 이외의 요인에 의한 변화는 없다는 가정을 토대로 산출

[표 3] 노무제공자, 예술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수: 2020~2024년

(단위: 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증가율
근로자(천명)	14,112	14,550	14,899	15,200	15,365	2.1%
노무제공자	-	432,395	735,408	791,083	826,864	24.1%
예술인	329	49,459	50,797	49,126	46,993	-1.7%
자영업자	30,629	36,859	42,643	47,604	53,705	15.1%

주: 1)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은 2021.7월부터 적용 및 시행되어 2021년 7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인원을 중복제거한 순인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2021~2024년까지임

2) 예술인은 연도 말 기준 피보험자수로 연평균 증가율은 2021~2024년까지임

3) 자영업자는 연도 말 기준 가입자 수

자료: 고용보험 DB, 고용노동부

- 4) 제77조의9(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휴급여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급여등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제77조의4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급여등의 지급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 5) 제77조의4(예술인의 출산전후휴급여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술인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급여 등(이하 "출산전후휴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제77조의9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급여등의 지급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표 4] 고용보험 가입자 수 대비 출산전후휴가 사용자 수의 비중: 2020~2024년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근로자	0.50%	0.48%	0.48%	0.47%	0.49%
노무제공자	—	0.00%	0.05%	0.11%	0.11%
예술인	—	0.05%	0.12%	0.23%	0.30%

주: 1)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은 2021.7월부터 적용 및 시행되어 2021년 7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인원을 중복제거한 순인원임

2) 예술인은 연도 말 기준 피보험자수

3) 자영업자는 연도 말 기준 가입자 수

자료: 고용보험 DB,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산출

[표 5] 자영업자출산전후휴직급여 사용자 수(추정치): 2027~2031년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자 수(A, 명)		81,833	94,167	108,360	124,692	143,486
시나리오 I	자영업자출산전후휴직급여 사용자 수(B1=A×0.1%, 명)	90	104	119	137	158
시나리오 II	자영업자출산전후휴직급여 사용자 수(B2=A×0.3%, 명)	246	283	325	374	431

주: 1. 각 표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실제 출산에 대한 인식의 변화 및 제도적 변화 등으로 인해 본 추계에서의 추정치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지급단가) 2026년 예산안 기준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원단가(83,913원)

를 적용하되, 동 금액이 추계기간 중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자영업자는 소득 파악이 어렵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한 기준보수는 실제 소득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7등급의 기준보수 중 원하는 등급을 선택하여 가입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추진될 자영업자출산전후휴직급여등의 지급단가는 이러한 요인에 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
- 본 추계서는 2026년 예산안 기준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단가가 추계기간 동안 유지된다는 가정을 토대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

○ (지급기간) 90일

- 현행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90일에 대해 지급하면서 다태아 및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지급 기간을 확대(다태아 120일, 미숙아 100일)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이러한 요인에 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⁶⁾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예술인의 출산전후휴가등의 지급요건 등) ② 출산전후휴가등의 지급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표 6] 자영업자출산전후휴직급여의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추정치): 2027~2031년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시나리오 I	사업대상자 수(A1, 명)	90	104	119	137	158
	지급기간(B, 일)	90	90	90	90	90
	1일 지원단가(C, 원)	83,913	83,913	83,913	83,913	83,913
	추가재정소요(D1, 백만원)	679	782	900	1,035	1,191
시나리오 II	사업대상자 수(A2, 명)	246	283	325	374	431
	지급기간(B, 일)	90	90	90	90	90
	1일 지원단가(C, 원)	83,913	83,913	83,913	83,913	83,913
	추가재정소요(D2, 백만원)	1,854	2,134	2,455	2,825	3,251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장래에 발생할 출산에 대한 인식의 변화 및 제도적 변화와 실제 지급단가 등으로 인해 본 추계에서의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또한, 개정안은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유산·사산을 이유로 휴업을 한 경우에 대해서도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자영업자유산·사산휴직급여가 지급될 경우 고용보험기금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
 - － 자영업자유산·사산휴직급여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예산안 기준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대비 유산·사산휴가급여의 비중(0.7%)을 적용하여 산출

[표 7] 자영업자출산전후휴직급여등의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추정치):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시나리오 I	자영업자출산전후휴직 급여(A1)	679	782	900	1,035	1,191
	자영업자유산·사산휴직 급여(B1)	5	5	6	7	8
	추가재정소요(C1=A1+B1)	684	787	906	1,043	1,200
시나리오 II	자영업자출산전후휴직 급여(A2)	1,854	2,134	2,455	2,825	3,251
	자영업자유산·사산휴직 급여(B2)	13	15	17	20	23
	추가재정소요(C2=A2+B2)	1,867	2,149	2,473	2,845	3,274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장래에 발생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과 출산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으로 인해 본 추계에서의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 예술인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출산한 경우: 출산 전과 후를 연속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하되, 출산 후에 45일(가목의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
 - 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100일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90일
-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②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기간은 제104조의 9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예술인"을 "노무제공자"로 한다.

IV. 부대의견

- 본 추계서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과 출산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 주요 가정의 변화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 향후 제도 설계 과정에서 자영업자출산전후휴직급여등에 관한 지급 요건, 지급 수준, 지급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이 구체화 될 경우 본 추계에서의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임의가입 형태임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시행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수가 증가할 수 있으나 이러한 요인에 의한 변화는 없다는 가정을 토대로 산출하였으므로 향후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